

#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8-22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0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개정이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  - \*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

## □ 주요내용

- 11조 :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, 취소 처분 시 청문을 하도록 명시 함.
- 12조 :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 허가 및 대부기간, 갱신 기간, 횟수를 명시 함.
- 13조 :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 명시 함.
- 14조 :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 청문 규정 명시 함.
- 15조 :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 명시 함.

## □ 개정조례안 : 붙임1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-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3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붙임4
-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19. 8. 21. ~ 2019. 9. 10.(21일간)

## □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 조례 : 붙임 5
- 입법예고 결과 : 붙임 6
- 방침결정문 : 붙임 7

< 불임 1 >

##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(시장의 인정취소)** ① 시장(市長)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  
② 시장(市長)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**제12조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등)** ① 시장(市長)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5년 단위로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 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.

②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 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.

**제13조(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)** 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, 권리 내역,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「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(市長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상인회의 등록 취소)** 시장(市長)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)** 시장(市長)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상생경제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상생경제과장 김종수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상권활성화팀장 송해근
	담당자 성명·전화	구본석 (행정 3591)

< 불임 2 >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<p>제11조(시장의 인정취소) ① 시장(市長)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(市長)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.</p>
〈신 설〉	<p>제12조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횿수 등)</p> <p>① 시장(市長)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5년 단위로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횿수는 1회에 한정한다.</p> <p>②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 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.</p>
〈신 설〉	<p>제13조(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) 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, 권리 내역,</p>

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「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(市長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4조(상인회의 등록 취소) 시장(市長)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5조(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) 시장(市長)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.